



제 418국회 (정기회)
제 7차 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진흥원 출연근거 마련〉

■ 김우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83호)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22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김우영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우영의원 등 19인

나. 제 안 일 : 2024. 9. 2.

다. 회 부 일 : 2024. 9. 3.

2. 허성무의원안

가. 제 안 자 : 허성무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9. 24.

다. 회 부 일 : 2024. 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우영의원안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의 금전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OO페이”, “OO머니”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출연 또는 기부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규정이 없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2. 허성무의원안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수익을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미사용잔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현행법상 출연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이익으로 모두 귀속되고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도 휴면예금과 같이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연 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출연된 휴면선불충전금의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및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40조 및 제44조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잔액을 서민
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의 자활지원계정(김우영의원안) 또
는 휴면예금등관리계정(허성무의원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2조, 제55조의2 등).

김우영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 (생략)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이라 한다)의 출연금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잔액(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이라 한다)을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④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은 제3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출연하기 전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미

<신 설>	사용잔액의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 및 동의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허성무위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휴면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나. (생략) <신 설> 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휴면선불충전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가 발행한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에 기록된 금액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한다)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5. ~ 8. (생 략)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11. (생 략)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휴면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등의 관리·운용

13. ~ 16.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생 략)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나.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

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금액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5. ~ 8. (현행과 같음)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예탁결제원 또는 선불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13.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휴면선불충전금의 경우: 휴면예금

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 회)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 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u>과 실</u>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 지) 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출연하기로 결 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 개월 전에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 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 주 <u>과 실</u>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생 략)	<u>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 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 선불충전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 다만, 선불전자 지급수단이 무기명으로 발행되어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 회) ----- ----- ----- -----, ----- ----- <u>과 실 또는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기록된 휴면선불충전금이</u>----- -----. 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 지) ① ----- ----- ----- ----- ----- -----, ----- ----- <u>-과 실 또는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기록된 휴면선불충전금을</u>----- -----. ② (현행과 같음)
--	--

□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¹⁾으로, 정부 출연, 금융기관 출자·출연, 휴면예금등 출연,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자금대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²⁾

○ 진흥원의 회계는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 서민금융보완계정, 자활지원계정과 고유계정으로 나뉘며, 계정별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을 적립하고 손실이 생기면 해당 적립액으로 보전하도록 하며,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³⁾

1) 2021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2023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됨.

2)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등의 알선
3.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연구 및 대외 교류·협력
4.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5.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6.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7.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8.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9.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10. 삭제 <2021. 6. 8.>
11. 제29조에 따른 서민금융협회의의 운영 사무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휴면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등의 관리·운용
13. 제45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14. 제79조제3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6.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 ④ (생략)

3)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정 상호 간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대차 등의 거래 및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③ 휴면계정과 다른 계정 간 거래 및 휴면계정에 대한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이 중 자활지원계정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계정으로, 정부 출연금, 기부금품,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그 용도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 사업 수행, 사업수행기관 지원 등임.

○ 2023년 기준 자활지원계정의 수입은 정부 출연금 7,238억원, 휴면계정 전입금 150억원, 기타(기부금 등) 1,427억원 등 총 1조 353억원이 발생하였음.

○ 자활지원계정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햇살론유스는 취약 청년층에 대한 신용보증상품이고, 미소금융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전통시장 영세상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저리의 대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이며, 정부 출연사업인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의 사업도 수행하고 있음.

- 2023년도 자활지원계정의 지출은 햇살론유스 729억원, 미소금융 1,493억원, 정부출연사업 7,253억원 등 총 1조 456억원임.

□ 휴면계정은 휴면예금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정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휴면예금등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며, 그 용도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지급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임.

○ 2023년 기준 휴면계정의 수입은 출연금 4,529억원, 운용수익금

1,019억원 등 5,548억원이고, 지출은 원권리자 지급 2,952억원, 자활지원계정 전출 150억원, 기타 31억원 등 3,133억원임.

□ 다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데,⁴⁾ 대표적으로는 카카오페이머니, 선불하이패스, 네이버페이포인트, 티머니 등이 있음.

○ 현재(2024년 4월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는 82개로, 이들 업체의 2024년 6월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은 2조 8,890억원임.

[표 1]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순번	회사명	선불충전금			
		‘21년말	‘22년말	‘23년말	‘24년 6월말
1	카카오페이	392,784	452,848	531,209	558,191
2	에스엠하이플러스	260,376	276,026	290,113	298,738
3	한국조폐공사	128,137	230,849	189,291	284,176
4	네이버파이낸셜	198,572	219,744	258,097	278,233
5	티머니	193,956	199,674	209,788	215,910
6	쿠팡페이	96,832	106,045	120,719	132,265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순번	회사명	선불충전금			
		‘21년말	‘22년말	‘23년말	‘24년 6월말
7	롯데멤버스	130,051	127,545	129,318	126,533
8	비바리퍼블리카	115,399	92,488	107,727	117,184
9	에스케이플래닛	100,756	95,375	88,974	88,094
10	한국문화진흥	32,241	75,023	70,678	77,023
	기타	1,344,370	601,543	696,183	712,700
	합계	2,993,474	2,477,160	2,692,097	2,889,047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충전된 금액의 소멸시효는 「상법」 상⁵⁾ 5년이나 개별사업자의 약관 등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예컨대, 카카오페이⁶⁾,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⁷⁾ 등의 경우 이용약관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유효기간)을 각각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충전된 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연 4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완성 현황

(단위: 백만원)

순번	회사명	선불충전금 소멸시효 완성액		
		2021	2022	2023
1	티머니	18,312	19,034	20,730

5)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 「카카오페이 이용약관」 제10조(카카오페이머니 계정, 한도, 충전, 환불, 출금, 수수료, 소멸시효, 결제 및 거래 취소) ⑪ 카카오페이머니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년입니다.(후단 생략)

7) 「네이버페이 이용약관」 제19조(네이버페이 포인트) ⑬네이버페이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년입니다.

순번	회사명	선불충전금 소멸시효 완성액		
		2021	2022	2023
2	에스엠하이플러스	3,311	3,717	3,973
3	이동의즐거움	3,662	4,078	4,193
4	마이비	4,180	3,975	3,721
5	한국문화진흥	917	2,603	3,062
6	DGB유펜이	1,340	1,268	1,120
7	한국철도공사	-	437	637
8	롯데쇼핑	391	1,533	1,471
9	한국선불카드	1,080	953	889
10	지마켓	-	2,004	6,105
11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	72	344
12	부산하나로카드	621	615	555
13	한페이시스	610	539	494
14	골프존	765	37	50
15	섹타나인	282	400	372
16	갤럭시아머니트리	2	1	19
17	엔에이치엔페이코	9	96	146
18	에스케이플레닛	13	71	71
19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8,195	30	746
20	우아한형제들	5	17	29
기타	-	641	716	262.5
합계		44,336	42,196	48,989.5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개정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진흥원의 자활지원계정(김우영 의원안) 또는 휴면계정(허성무 의원안)으로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당 잔액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⁸⁾ 사용됨으로써 미소금융, 햇살론유스,

8) 자활지원계정으로 출연되는 경우 해당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직접 활용될 수 있으며, 휴면계정으로 출연되는 경우에는 원금은 원권리자 지급을 위해 휴면계정에 유보하되, 운용수익등을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 간접적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

직접대출 등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 더욱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휴면계정으로 출연될 경우 기존 휴면예금등과 동일하게 원금의 경우 원권리자 지급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의 원권리자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두 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진흥원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출연금이 귀속되는 계정, 출연 절차, 출연된 금액의 활용 등이 상이함. 따라서 아래에서는 각 개정안 별로 검토함.

[표 3]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

구분	김우영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출연대상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⁹⁾	
출연금액	·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	
출연계정	· 자활지원계정	· 휴면계정
출연절차	· 출연 전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출연하기 1개월 전 원권리자에게 통지 · 다만, 무기명으로 발행된 경우 통지 면제
재원활용	· 서민금융 재원으로 직접 활용	· 원금은 원권리자 지급에만 활용 · 운용수익 등은 자활지원계정 전출, 기타 원권리자 보호활동에 활용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김우영 의원안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이라 함)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잔액(이하 “미사용잔액”이라 함)을 자활지원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이 미사용잔액을 출연하려는 경우 미리 원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해서는 미사용잔액이 자활지원계정에 출연될 경우 원금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직접 활용되어 원권리자의 환급 요구에 응할 수 없는 등 원권리자 보호가 어렵고, 교통카드 등 무기명으로 발행된 미사용잔액의 경우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와 동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음.

○ 참고로, 현행 서민금융법은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청구에 의한 지급 대상을 ‘휴면계정’에 출연된 휴면예금등으로 규정¹⁰⁾하고 있고, 휴면계정의 용도¹¹⁾와 달리 자활지원계정은 원권리자에 대한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0) 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1)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5조에 따른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지급을 제정의 용도¹²⁾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미사용잔액을 출연하기 전에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원권리자에 대한 지급이 아닌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직접 활용하려는 취지로 보임.

○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¹³⁾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확인되는 것(이하 “기명식”이라 함)¹⁴⁾과 그 이외의 것(이하 “무기명식”이라 함)으로 구분하고 있음.

- 2023년말 기준 미사용잔액 상위 5개사 중 4개사¹⁵⁾가 교통 무기명 선불충전금 위주로 발행하고 있는 등 미사용잔액 중 무

12)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수행
2.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3. 제1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4.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6.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14)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이용한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200만원

15) 티머니(교통카드), 에스엠하이플러스(선불 하이패스), 이동의즐거움(교통카드), 마이비(교통카드)

기명식의 비중이 높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출연을 위해서는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미사용잔액이 실
제 출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다음으로, 허성무 의원안의 경우, 미사용잔액을 서민금융법에 따른
‘휴면예금등’의 하나로 규정¹⁶⁾하여 현행 휴면예금등 출연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4] 휴면예금등 출연절차와 개정안 비교

휴면예금등	허성무의원안
휴면계정에 출연	휴면계정에 출연
· 출연 시 진흥원에 자료제출(\$40②) -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주소·주민 (외국인)등록번호·금액 등 -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발행인(지급인) 정보·자기앞수표발행번호·액면금액 등 - (실기주과실) 주권의 발행인·실기주 과실 내역 등	· 출연 시 진흥원에 자료제출(\$40②) - (추가)(휴면선불충전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주민(외국인)등록번호·금액 등 다만, 무기명으로 발행되어 원권리자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미제출 가능
· 원권리자가 \$40②의 자료 조회 가능 (\$43) -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실기주 과실 제외	· 원권리자가 \$40②의 자료 조회 가능 (\$43) -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실기주 과실,

16) [개정안은 아래의 현행 휴면예금등 정의 규정에 미사용잔액을 ‘휴면선불충전금’으로 정의하여 포함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휴면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

나.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명의인 주권(이하 “실기주”라 한다)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휴면예금등	허성무의원안
· 출연 1개월 전 원권리자에게 통지 (§44) -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실기주 과실 제외	무기명 휴면선불충전금 제외 · 출연 1개월 전 원권리자에게 통지 (§44) -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실기주 과실, 무기명 휴면선불충전금 제외
원권리자 지급청구 시 같음하는 금액 지급 (§45)	좌 동

○ 개정안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등 이용자의 직접적인 결제 혹은 충전에 의하지 않은 미사용잔액에 대해서는 휴면예금등 출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위원회 및 관련 협회¹⁷⁾의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미사용잔액을 휴면계정에 출연하는 것은 재량사항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사업자 등이 미사용잔액 출연 과정에서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등을 출연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부분을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명시하는 방안¹⁸⁾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정안은 미사용잔액을 자활지원계정 또는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원권리자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17)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의견임.

18) 이 경우 개정안의 출연 대상이 되는 휴면선불충전금 정의에서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출연은 원권리자 환급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원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해 원권리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무기명 방식으로 발행된 경우 현실적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휴면계정으로의 출연은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등 이용자가 미리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미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출연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06